제1774호

2020. 8. 27.(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61

영등포구보

고 시

· 제2020-161호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폐지 고시 ····· 1
· 제2020-162호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변경 고시 ····· 3

공 고

· 제2020-139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 5
· 제2020-1407호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76-2020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61호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고 시 일 : 2020. 08. 27.
2.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
4. 고시대상

총 계 (구 간)	위 계 구 분				비 고
	대로	로	길	기타 (종속구간)	
1	-	-	1	-	폐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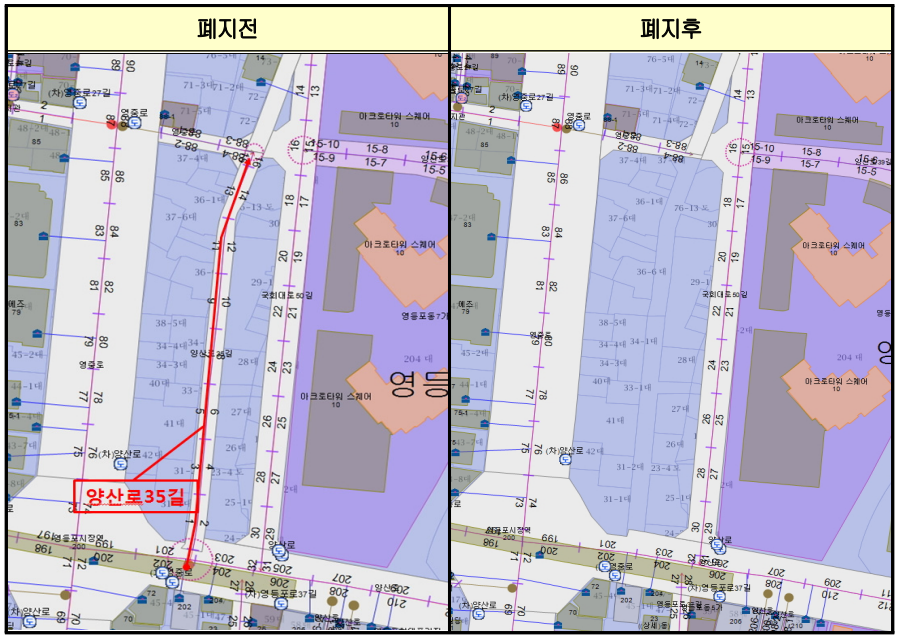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도로구간 폐지 조서 1부. 끝.

□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조서 (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

일련번호	도 로 명	도로구분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m)	기초번호		폐지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길이(m)	폭(m)		시작번호	끝번호		
1	양산로35길	주도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4-2	영등포동7가 37-1	별첨도면	153	6	20	1	16	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	

□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중심선 (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62호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고 시 일 : 2020. 08. 27.
2.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4. 고시대상

총 계 (구 간)	위 계 구 분				비 고
	대로	로	길	기타 (종속구간)	
1	-	-	-	1	변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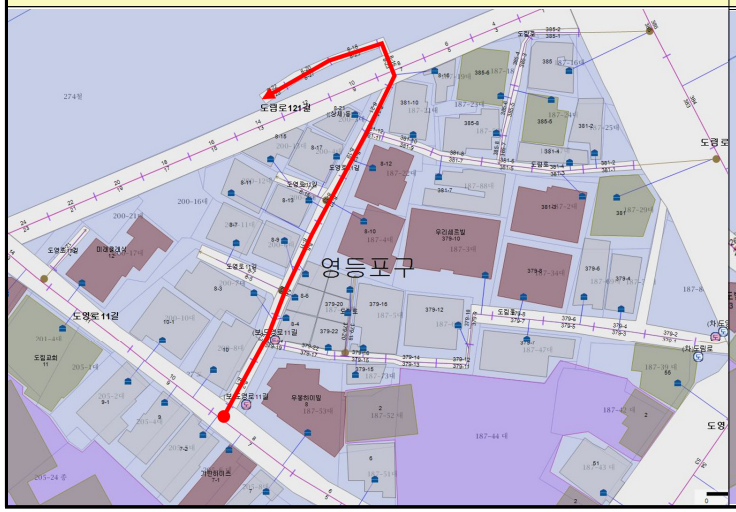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1부. 끝.

□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번호	구분	도 로 명	도로구분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m)	기초번호		유사도로명	변경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길이(m)	폭(m)		시작번호	끝번호			
계		1건													
1	변경전	도영로11길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7-64	도림동 202-53	별첨도면	106.5	3	10	8-1	8-29	도영로 외 4	도로구간 일부 폐지	도로구간 변 경
	변경후				도림동 201-27	도림동 187-17	별첨도면	76.9	2.5	10	8-1	8-23			

□ 도로구간 변경 중심선

변경 전	변경 후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39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서울영등포 제8-1-17호 (2020년)	오텍오티스파킹 시스템(유) 강성희	VT3D-60AIK-리프트180턴-롯데시네마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2020. 08.19.
2	서울영등포 제8-1-18호 (2020년)	국제기공(주) 이종대	KJ-CHT3-66-1L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6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2020. 08.19.

○ 문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02-2670-42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407호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연번	안건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징수과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안전과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붙임 안건 4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8.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다.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1)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7. 9. ~ 7. 29./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 제8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8.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2020. 6. 25. ~ 7. 15.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8.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사항을 우리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 특별휴가제 개선 및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를 통해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선

1) 임신검진휴가 확대

- 여성보건휴가를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기간 내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로 확대**함.(안 제24조제3항)

2) 유산휴가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

- **임신 초기 유산·사산 공무원에 대한 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함.(안 제24조제5항)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함.(안 제24조제6항)

3) 자녀돌봄휴가 부여와 가산일수 적용(안 제24조제18항)

- 자녀돌봄휴가 부여 및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

4) 직원 자기계발 휴가 부여(안 제24조제19항)

-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

1) 연가 가산 제도 개선(안 제18조제2항)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 다음해에 1일의 연가가산** 대상에 포함함.
- 교육훈련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함.

2)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 개선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를 10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이 가능하도록 **연가의 저축 제도 도입**(안 제20조의4)

다. 연가제도 운영기준 정비

1) 연가사용 권장을 위한 조치 기간 확대(안 제20조의3)

- 권장연가일수 공지기간 확대
-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시기 통보기한 확대

2) **연가 일수에 토요일·공휴일 산입 제외**(안 제25조)

-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을 산입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0. 7. 30. ~ 8. 4./ 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을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병가”를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의2 중 “일수가”를 “일수(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를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1조제1항 본문 중 “연가일수”를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제23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임신기간이 12주 이상"을 "임신기간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⑱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⑲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의2 중 "제21조제3항·제4항"을 "제20조의3 제1항·제2항, 제21조의제3항·제4항"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3항"을 "제22조"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휴가일수가"를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단서 중 "휴가일수가 15일"을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로 하고, 제2호가목 단서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9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② --------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1.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⑥ (생 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의2(연가 당겨쓰기)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	제20조의2(연가 당겨쓰기)---------- ---------- 일수(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1.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2. ---------- 10월 31일----------

<신 설>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 -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 ---------- ----------.

<단서 신설 2019.06.28.>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 교육 훈련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또는 「결핵 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 ---------- ---------- -----.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삭 제>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 임신기간이 ----------
3.·4. (생 략)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⑩ ~ ⑯ (생 략)	⑪ ~ ⑰ (현행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⑱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⑲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제24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 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별표5]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생 략)	[별표5]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연가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 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8.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등포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법률의 위임없이 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규정한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에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조항 신설(안 제4조제1항)
나.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조항 삭제 (안 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2020. 7. 23. ~ 8. 1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생 략)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